

「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6월 1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정익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, 「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)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됨에 따라, 종전 「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법령과의 관계
 -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.
- 검토의견
 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1부.

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평창군 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“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

종전의 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」 규정에 따른다.

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평창군 군세 기본조례」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.